

세무학회지

제16권 제6호 2015년 12월 pp.333~351

한국세무학회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홍기용** · 문진주***

〈요 약〉

우리나라의 주요한 세금의 대부분이 신고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면에서 세금명칭은 납세자 권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각국의 세금명칭을 비교하고, 세금명칭변경 전후의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현재의 세금명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레저세”, “자동차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에 대해 낮게 평가되어 세금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된 새로운 세금명칭을 제시한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일반소비세”, “사행오락세”, “재산취득세”, “재산보유세”, “자동차보유세”, “재산보유특별세”, “교육지원세”, “교통에너지환경지원세”, “지역개발지원세”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는 면에서, 세금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높았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취득세/재산세,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지역개발세의 명칭변경이 세금이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레저세, 자동차세의 명칭변경은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로 세금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로 인해 헌법 제38조에 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납세의무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필요

* 이 논문은 2015.11.13.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저자들이 발표하는 “세금명칭의 변경효과와 납세자권익”을 수정·보완 및 확대를 위해 새로운 데이터와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음.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3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hong@tax.or.kr, 제1저자

*** 거제대학교 세무회계과 초빙교수, pr15045@koje.ac.kr, 교신저자

한 가산세 등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막는 등 납세자권익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금명칭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논문은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최초의 단초가 되는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세목, 세금명칭, 납세자권익, 세금인식, 납세순응

I. 서 론

세법은 국민생활과 빈번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 영역이다. 모든 국민은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세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장이 아니다. 단일 분야로서 국내 최대 규모를 가진 세법은 다른 법률들에 비해 국민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한층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이해와 적용이 쉬어야 한다(이전오·변혜정, 2011).

그런데 이와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법을 국민이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민의 세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또한 세법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최근 다양한 세무행정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낮은 납세순응도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명호·심태섭, 2008)

그러므로 세법은 국민이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알기 쉽게 고쳐 쓰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절실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률이 해마다 격증하는 추세에 있는 현대의 조세국가에서 납세자인 국민에게 알기 쉬운 세법을 제공하는 것은 징세권자인 국가가 져야 하는 최소한의 책무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국민이 알기 쉬운 세법이 되기 위한 첫걸음인 세금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비롯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증연구이다. 조사대상자를 일반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세법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러한 조사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일의 설문지 내용만으로 읽어본 뒤 응답한 것이라 세금명칭 변경과 같은 큰 주제에 대해 단시간에 답을 요구한 면이 우려되었으며 설문내용도 다양하게 구성하기 곤란하여 단순화 한 것이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결과 세금명칭변경 전후의 선호도에 따라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관련과목수강자와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에 따라 세금명칭변경에 대

한 분석결과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합리적 세금명칭을 특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선 세금명칭에 대한 기존연구를 파악한 후,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서 세금명칭변경 전후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변경된 세금명칭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분석을 하였다.

II. 세금명칭 변경을 위한 배경 분석

1. 세금명칭의 의미와 국제비교

세금의 명칭, 즉 세목은 당해 세금의 특징을 일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과세대상과 과세목적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금은 오랜 역사가 있지만, 그동안 동일한 세목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과 과세목적이 사회, 문화 등의 변화와 함께 변천해 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세금명칭, 즉 세목도 현대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세금명칭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대상 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의 세금명칭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각국의 세금명칭은 그 나라의 오랜 역사와 문화, 경제 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세목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다. 다만 각국의 세금명칭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세금명칭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세금명칭을 좀 더 목적에 적합하고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

<표 1>은 세금명칭에 대한 각 국가별 비교를 요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금명칭은 한자권에 있는 일본 및 중국과 비교할 때 더 유의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미국 등의 세금명칭을 참고할 수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일본의 세금명칭과 동일하지만, 중국에서는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과세대상을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가 더 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세금명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본에서는 소비세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증치세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판매세라고 하는데, 조세원리사 다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서 지출목적이 지정된 세목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세목이다. 이러한 세금은 각각 교육지원세, 농어촌특별지원세, 교통에너지환경지원세 등으로 세금명칭이 정해지는 경우 그 의미가 뚜렷해 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표 1〉 세금명칭의 국가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 국	일 본	중 국
국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와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주세(酒稅) - 인지세(印紙稅)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재평가세 - 관세 - 임시수입부가세	- Individual income tax - Corporation income tax - Estate and trust income tax - Estate tax - Gift tax - Employment tax - Excise tax - Social Security Tax - Custom Duties	- 所得稅 - 法人稅 - 地方法人特別稅 - 復興特別所得稅 - 地方法人稅 - 相續稅・贈與稅 - 登録免許稅 - 印紙稅 - 消費稅 - 酒稅 - たばこ稅 - たばこ特別稅 - 揮發油稅 - 地方揮發油稅 - 石油ガス稅 - 自動車重量稅 - 航空機燃料稅 - 石油石炭稅 - 電源開發促進稅 - 關稅 - とん稅 - 特別とん稅	- 增值稅 - 消費稅 - 營業稅 - 企業所得稅 - 個人所得稅 - 資源稅 - 城鎮土地使用稅 - 房產稅 - 車輛購置稅 - 印花稅 - 烟叶稅 - 關稅 - 船舶噸稅
지방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Property tax - Sales tax - Alcoholic beverages sales tax - Amusements sales tax - Insurance premiums sales tax - Motor fuels sales tax - Pari-mutuels sales tax - Public Utilities sales tax - Tobacco Products sales tax - License tax - Alcoholic beverages license tax - Amusements license tax - Corporations in general license tax - Hunting and fishing license tax - Motor vehicle operators license tax - Public utilities license tax - Occupation and business license tax - Individual income tax - Corporation income tax - Death and gift tax - Documentary and stock transfer tax - Severance tax	- 個人住民稅 - 個人事業稅 - 法人住民稅 - 法人事業稅 - 道府縣民稅利子割 - 道府縣民稅配当割 - 道府縣民稅株式等 - 譲渡所得割 - 不動産取得稅 - 固定資産稅 - 都市計畫稅 - 事業所稅 - 特別土地保有稅 - 法定外普通稅 - 法定外目的稅 - 地方消費稅 - 地方たばこ稅 - 輕油引取稅 - 自動車取得稅 - ゴルフ場利用稅 - 入湯稅 - 自動車稅 - 輕自動車稅 - 鉦產稅 - 狩獵稅 - 鉦區稅	- 城市維護建設稅 - 城鎮土地使用稅 - 個人所得稅 - 企業所得稅 - 耕地占用稅 - 土地增值稅 - 房產稅 - 車船稅 - 印花稅 - 契稅 - 增值稅 - 資源稅 - 營業稅

[출처]

- 한국세금명칭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미국세금명칭
 국세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Data Book 2014,
<https://www.irs.gov/uac/EOI-Tax-Stats-IRS-Data-Book>
 지방세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factfinder.census.gov/faces/tableservices/jsf/pages/productview.xhtml?src=bkmk>
- 日本財務省, 國稅・地方稅の稅目・內譯,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dition/001.htm
- 중국세금명칭 : 中國國家稅務總局, 現行稅收制度,
<http://www.chinatax.gov.cn/n810351/n810901/n848188/c1161503/content.html>

2. 세금명칭의 변경효과

세금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납세자권익, 즉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바람직한 세금명칭을 특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그러나 세금명칭변경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명칭부여(nameing)와 그 효과에 대한 관련연구를 통해 세금명칭의 변경효과에 대해서 논하여 보고자 한다.

명칭(name)은 기업의 브랜드자산(brand equity)을 구축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소비자가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Keller, 1993). 이러한 명칭 즉 브랜드네임은 브랜드자산을 구축하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이 무엇이며 제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목표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다(Keller, 1993). 또한 제품 회상 및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브랜드 네임은 매우 중요하다(Aaker, 1990 ; Charmasson, 1988 ; Keller, 1993). 즉, 세금의 명칭은 세금에 대한 주된 특징과 세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금의 특징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세금의 명칭은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며, 세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납세순응 제고를 위해서는 탈세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정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실납세의무를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납세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이다(이혜원, 20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금명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오면서 오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관점에서 세금명칭의 변경은 세금에 대한 오해 등을 해소하고 이해정도를 높일 수 있으며, 불합리한 세금명칭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납세자의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를 높여, 세원투명성과 세수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우리나라에서는 세금명칭의 변경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다. 다만, 기업의 상호변경효과(송영균, 1991 ; 오희장 · 남병탁 · 박승동, 2003 ; 오희장 · 현영아, 2003 ; 장경철 · 김연권, 2009), 상표, 브랜드 등의 변경효과(한은경 · 홍수경, 2002 ; 최성우 · 윤권순, 2002 ; 안주아 · 신명희, 2007 ; 최용규 · 오정석, 2004) 등에 대한 관련연구들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연구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가설 등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세금명칭에는 세금 즉 조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게 되고, 이러한 명칭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면,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또한 납세순응도를 높여 납세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브랜드네임에 대한 이론에서 명칭(name)은 브랜드자산을 구축하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이 무엇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며(Keller, 1993), 또한 이러한 제품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브랜드네임은 제품 회상 및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Aaker, 1990 ; Charmasson, 1988 ; Keller, 1993). 이러한 이론을 세금명칭에 접목하여 본다면 세금의 명칭은 세금에 대한 주된 특징과 세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금의 특징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세금의 명칭은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며, 세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어 세금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의 납세순응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은 세무조사등 처벌위주의 세무정책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선행연구(Witte and Woodbury, 1985 ; Dubin and Wide, 1988)에서도 세무조사는 납세순응 행위의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진권 · 박창균(2002)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비율의 강화뿐만 아니라 가산세율 강화, 납세자들의 납세인식 제고정책, 홍보정책 등의 조화가 납세순응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배춘호(2010)는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납세순응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영락(2005), 이해원(2012)등의 선행연구에서도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세금의 특징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세금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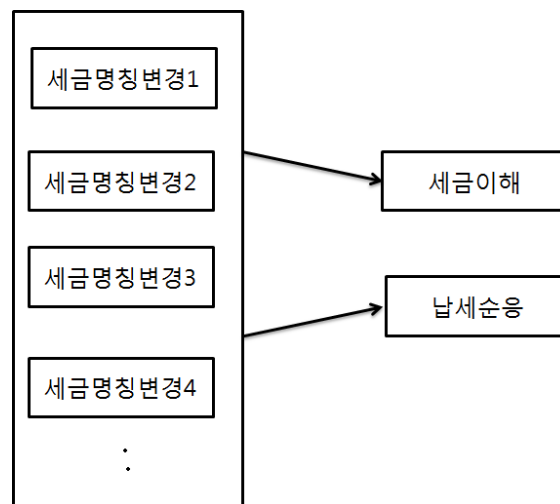
가설 1 :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높을 수록 세금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높을 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세금명칭 변경에 대한 선호도가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개념적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가. 독립변수

본 연구는 세금명칭변경이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세금명칭 변경안에 대한 선호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세금명칭 변경안에 대해 “ooo세로 명칭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문문항에는 ‘① 아주 아니다. ② 상당히 아니다. ③ 조금 아니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상당히 그렇다. ⑦ 아주 그렇다’로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나.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세금이해는 응답자가 각종 세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법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주관적 이해도는 응답자가 세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① 아주 아니다. ② 상당히 아니다. ③ 조금 아니다. ④ 보통이다. ⑤ 조금 그렇다. ⑥ 상당히 그렇다. ⑦ 아주 그렇다’로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납세순응은 세금납부를 부당하게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인식을 말한다. 납세순응에 대한 설문은 박명호·심태섭(2008)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였으며,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세금명칭 변경이 납세자의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보다 다양한 응답자로부터 세금명칭의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적절한 방법이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인천과 거제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2015년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배포하여, 총 285매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한 답변을 제외한 270매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세금변경전후의 선호도를 비롯하여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은 19개의 문항으로 단순화하여 짧은 시간에 정확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특히 연구용 설문지의 경우 작성항목이 너무 많아 응답자의 무성의한 답변이 있을 수도 있고 거부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고려하여 본 설문에서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질문만을 하였다. 또한 설문지 구성을 위하여 예비조사 시 새로운 세금명칭으로 변경한다면 어떤 명칭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하였다.

설문응답자의 구성은 <표 2>와 같이, 세무관련과목의 수강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34명(49.6%), 세무관련 수강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136명(50.4%)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현황

구 분	표 본	
	명	%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49.6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50.4
계	270	100

5. 자료분석 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세금명칭변경전후의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세금명칭변경의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세금명칭변경 전후의 선호도 분석

1. 세금명칭변경전의 선호도 분석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금명칭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목별로 현재 세금명칭이 잘 표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즉 설문문항은 “ooo세의 명칭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하였다.

첫째, 현행세법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인 경우 평균 3.91($SD=3.783$),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평균 3.86($SD=1.362$)로 현재 명칭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금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세금에 대한 사전지식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세금명칭에 대한 선호도에 큰 차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재 세금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은 현재의 세금명칭은 세금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현행세법에서 사업자가 그들이 제공한 재화 혹은 용역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아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인 경우 평균 3.94($SD=1.455$)로 현재 명칭에 부정적이였다. 이에 반하여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평균 4.32($SD=1.178$)로 현재 명칭에 대해 보통이상의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해 학습하여 부가가치세의 세법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의 경우 현재의 명칭이 익숙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높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335, p<.05$).

셋째, 현행세법에서 경주, 경마, 경륜, 경정 등의 발매권을 구매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레저세”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인 경우 평균 3.20($SD=1.342$)로 현재 명칭에 부정적인 반면,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평균 3.58($SD=1.428$)로 현재 명칭에 대해

보통정도의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의 경우 “레저세”에 대해 학습하여 레저세의 세법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의 경우 현재의 명칭이 익숙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높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249$, $p < .05$).

넷째, 현행세법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인 경우 평균 5.01($SD = 5.928$)로 현재 명칭에 긍정적인 반면,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평균 3.93($SD = 1.242$)로 현재 명칭에 대해 보통정도의 의견을 보였으며,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2.067$, $p < .05$). 이러한 결과는 “재산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자동차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개발세”의 현재 명칭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와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 모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세금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세금명칭변경전의 선호도 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소득세/ 법인세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3.91	3.783	.145 (.885)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3.86	1.362	
부가가치세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3.94	1.455	-2.335** (.020)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4.32	1.178	
레저세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3.20	1.342	-2.249** (.025)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3.58	1.428	
취득세/ 재산세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5.01	5.928	2.067** (.040)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3.93	1.242	
자동차세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3.74	1.163	-.996 (.320)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3.88	1.205	
종합 부동산세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3.87	1.294	-1.230 (.220)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4.06	1.185	
교육세 등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4.04	1.387	-1.142 (.255)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3.87	1.153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세금명칭변경후의 선호도 분석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된 새로운 세금명칭을 제시한 후 측정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설문문항은 “ooo세로 명칭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하였다.

첫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개인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인 경우 평균 5.37($SD=1.230$),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평균 5.22($SD=1.343$)로 명칭 변경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종전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 명칭에 비하여 매우 선호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업자가 그들이 제공한 재화 혹은 용역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아 납부하는 세금을 개별소비세와 구별하여 “일반소비세”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인 경우 평균 4.61($SD=1.589$)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평균 4.01($SD=1.214$)로 ‘보통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3.516, p<.01$).

셋째, 경주, 경마, 경륜 등의 발매권 구매에 대해 레저의 용어 및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사행오락세”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인 경우 평균 4.74($SD=1.456$),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평균 4.50($SD=1.596$)으로 명칭 변경에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취득세”,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보유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인 경우 평균 5.04($SD=1.279$),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평균 5.00($SD=1.344$)로 명칭변경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동차의 취득, 보유, 처분시 언제 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자동차보유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는 평균 4.64($SD=1.373$),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평균 5.00($SD=1.277$)로 세무관련과목수강자보다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가 세금명칭변경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20, p<.05$).

여섯째, 특정재산(건축물 및 토지)을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보유특별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의 경우 평균 4.01 ($SD=1.409$)로 보통이라는 의견을 보인 반면,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평균 4.38($SD=1.435$)로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80, p<.05$).

일곱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개발세”의 경우 특정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의 세금이라는 면에서 “교육지원세”, “교통에너지환경지원세”, “지역개발지원세”로 명칭변경하

는 것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의 경우 평균 5.02($SD=1.464$),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평균 4.87($SD=1.298$)로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세금명칭변경후의 선호도 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5.37	1.230	.926 (.356)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5.22	1.343	
일반소비세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4.61	1.589	3.516*** (.001)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4.01	1.214	
사행오락세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4.74	1.456	1.284 (.200)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4.50	1.596	
재산취득세/ 재산보유세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5.04	1.279	.280 (.779)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5.00	1.344	
자동차 보유세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4.64	1.373	-2.220** (.027)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5.00	1.277	
재산보유 특별세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4.01	1.409	-2.080** (.038)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4.38	1.435	
교육지원세 등	세무관련과목수강	134	5.02	1.464	.919 (.359)
	세무관련과목미수강	136	4.87	1.298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V. 세금명칭변경후의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 및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1. 세금명칭변경후의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도의 효과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금명칭변경후의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첫째, 세금명칭변경후의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본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명칭변경은 회귀계수는 0.178로 5% 수준에서 세금이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득세/재산세의 명칭변경은 회귀계수 0.131로 10%

유의수준에서 세금이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지역개발세의 명칭변경은 회귀계수 0.196으로 1% 수준에서 세금이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동차세는 회귀계수 -0.221로 10% 수준에서 세금이해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부동산세도 회귀계수 -0.191로 10%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세금명칭변경후의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법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실험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 소득세/법인세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의 경우 0.147($p < .1$)의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무관련과목수강자는 0.303($p < .01$)으로 세금이해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의 경우 -0.270($p < .01$)으로 세금이해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의 경우에는 각각 -0.170($p < .1$), -0.160($p < .1$)으로 세금이해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의 경우에는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의 경우에도 세무관련과목수강자만 0.301($p < .01$)로 세금이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세금명칭변경후의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도의 효과분석

	전체		세무관련과목수강그룹		세무관련과목미수강그룹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상수	2.520***	.494	2.658***	.620	3.779***	.566
소득세/법인세	.078	.078	.045	.109	.147*	.076
부가가치세	.178**	.071	.303***	.099	-.270***	.082
레저세	-.006	.060	-.170**	.082	-.039	.065
취득세/재산세	.131*	.077	-.019	.105	.088	.087
자동차세	-.221***	.082	-.003	.101	-.148	.100
종합부동산세	-.191**	.075	-.160*	.092	.012	.083
교육세 등	.196***	.073	.301***	.083	-.085	.093
표본수	270		134		136	
F(p-value)	8.582(.000)		11.412(.000)		2.697(.012)	
R ²	.165		.354		.08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2. 세금명칭변경후의 선호도에 따른 납세순응도의 효과분석

첫째, 세금명칭변경후의 선호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본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소득세/법인세의 명칭변경은 회귀계수 0.108로 1% 유의수준에서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별 분석에서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의 경우에만 0.132($p < .05$)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명칭변경은 회귀계수는 0.080로 5% 수준에서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저세의 명칭변경은 회귀계수 0.116으로 1% 유의수준에서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결과는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의 경우 0.161($p < .01$),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 0.097($p < .05$)로 두 집단 모두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의 명칭변경은 회귀계수 0.097로 5% 유의수준에서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세금명칭변경후의 선호도에 따른 납세순응도의 효과분석

	전체		세무관련과목수강그룹		세무관련과목미수강그룹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상수	3.489***	.274	3.035***	.395	3.991***	.421
소득세/법인세	.108***	.043	.048	.070	.132**	.057
부가가치세	.080**	.039	.100	.063	.017	.061
레저세	.116***	.033	.161***	.052	.097**	.048
취득세/재산세	.021	.043	.081	.067	-.019	.065
자동차세	.097**	.045	.054	.064	.106	.075
종합부동산세	-.026	.042	.048	.059	-.079	0.62
교육세 등	.045	.041	.060	.053	.063	.069
표본수	270		134		136	
F(p-value)	10.377(.000)		9.175(.000)		3.043(.005)	
R ²	.196		.301		.096	

주)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VI. 결 론

우리나라의 주요한 세금의 대부분이 신고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면에서 세금명칭은 납세자권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명칭변경 전후의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변경된 세금명칭의 선호도에 따라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재의 세금명칭에 대한 선호도의 분석결과,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현재명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아 세금명칭변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세”와 “레저세”의 경우 세무관련과목수강자는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반면,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의 경우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취득세/재산세”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으며, “자동차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개발세”의 경우 현재 세금명칭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와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 실험집단에서 모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세금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한 새로운 세금명칭변경후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세/법인세를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명칭변경하는 것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인 경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보통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레저세를 “사행오락세”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세를 “재산취득세”로, 재산세를 “재산보유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았다. 자동차세를 “자동차보유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보유특별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세무관련과목수강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의견을 보인 반면, 세무관련과목미수강자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세”, “교통에너지환경지원세”, “지역개발지원세”로 명칭변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 부가가치세와 취득세/재산세,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의 명칭변경이 세금이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동차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이해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재산을 소유한 사람만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조사대상이 자동차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금명칭변경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레저세, 자동차세의 명칭변경은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세금명칭변경후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 논문에서 제시된 세금명칭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금명칭의 변경을 통해 헌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납세의무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가산세 등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막아 납세자권익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바람직한 세금명칭이 정해지는데 기여되길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으며, 개인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1차 자료에 의한 탐색적 연구로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명칭변경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실증연구를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향후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 통제변수에 대한 고려와 다양한 연구표본, 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락. 2005. “세무조사제도와 납세자의 의식이 납세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제17호, pp.99-129.
- 박명호 · 심태섭. 2008.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pp.55-84.
- 배춘호. 2010. “국세청홈택스서비스시스템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 pp.225-267.
- 송영균. 1991. “상호변경이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 pp.67-101
- 안주아 · 신명희. 2007. “인터넷 포털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이 이용자의 선호도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구 한국광고학보), Vol.9, No.1, pp.139-165.
- 오희장 · 남병탁 · 박승동. 2003. “기업의 상호변경과 영업성과”, 경제학연구, Vol.51, No.2, pp.63-97.
- 오희장 · 현영아. 2003. “상호변경과 주가반응”, 경영학연구, Vol.32, No.3, pp.647-669.
- 이동식. 2012.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전오 · 변혜정. 2011. “알기 쉬운 조세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9권 제4호, pp.349-391.
- 이혜원. 2012.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재정포럼.
- 장경철 · 김연권. 2009. “기업의 상호변경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 최성우 · 윤권순. 2002. “포괄명칭 도입방안 검토 및 도입시 상표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 최용규 · 오정석. 2004. “공공시설의 명칭결정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 한은경 · 홍수경. 2002.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학보, 제5권 제2호, pp.69-108.
- 현진권 · 박창균. 2002.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 실험자료를 사용한 실증결과”, 경제학연구, 제50집 제1호, pp.124-144.
- Aaker, D. A. 1990. Brand Extensions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1. pp.47-56.
- Charmasson, H. 1988. The Name is the Game : How to Name a Company or Product. Dow Jones -Irwin, Homewood. IL.
- Conell, Bradford and Alan A. Shapiro. 1987. “Corporate Stakeholders and Corporate Finance”, *Financial Management*, Vol 16, pp.4-14.

- Conell, Bradford and Alan A. Shapiro. 1987. "Corporate Stakeholders and Corporate Finance", *Financial Management*, Vol 16, pp. 4-14.
- Dubin, J.A., and Wide, L.L. 1988. An Empirical Analysis of Federal Income Tax Auditing and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Vol 41, pp.61-74.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Data Book. 2014. <https://www.irs.gov/uac/SOI-Tax-Stats-IRS-Data-Book>
- Karpoff, Jonathan M., and G. Rankine. 1997. "In Search of a Signaling Effect : The Wealth Effects of Corporate Name Changes.", *Th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 18, pp.1027-1045.
- Karpoff, Jonathan M., and G. Rankine. 1997. "In Search of a Signaling Effect : The Wealth Effects of Corporate Name Changes", *Th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 18, pp.1027-1045.
- Karpoff, J. M. & G. W. Rankine. 1988. "The Effects of Corporate Name Change on Stockholder Wealth", Unpublished Working Paper. University of Washington.
- Karpoff, J. M. & G. W. Rankine. 1988. "The Effects of Corporate Name Change on Stockholder Wealth", Unpublished Working Paper. University of Washington.
- Keller, K. L. 1993.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Managing Customer-based brand equity. *Journal of Marketing*, Vol 57. pp.1-22.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factfinder.census.gov/faces/tableservices/jsf/pages/productview.xhtml?src=bkmk>
- Witte, A, D. and D, F. Woodbury. 1985.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s, *National Tax Journal*, Vol 8, pp.1-14.
- 日本財務省, 國稅・地方稅の稅目・內譯,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dition/001.htm
- 中國國家稅務總局, 現行稅收制度, <http://www.chinatax.gov.cn/n810351/n810901/n848188/c1161503/content.html>

The Effect of Tax Names Change in the Tax Understanding and Tax Compliance*

Ki Yong Hong** · Jin Joo Moon***

〈Abstract〉

Taxes name in terms of our country's most important tax and adopted a reporting system tha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axpayer interests. Nevertheless, now is the time needed for research in this field in terms of taxes relating to previous studies did not change the name. The first study in this respect, compared to a tax designation of the country, and tax preferences were examined before and after the name change, name change after the tax preferences are analyzed empirical understanding the impact on tax compliance and tax.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preferences for the current tax designation "tax/income tax" "value added tax" and "leisure tax", "car tax" and "property tax", "education tax", "transportation energy eco-tax", "common facilities tax", "regional development tax".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ax name change is required. Second, it was found that selection of new taxes proposed names and preferences gather the opinions of such experts' "personal income tax/corporate income tax", "general sales tax", "entertainment tax", "property acquisition tax", "property held tax", "automotive property tax", "property held special tax", "educational support tax", "energy,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support tax", "regional development support tax" in the face for a higher, the need for higher taxes renamed. Thir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impact on tax Name Rating understanding and tax compliance and tax changes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fluence of VAT and acquisition tax/property tax, education tax/environmental tax transport energy change in the name of understanding positive. In addition, income tax/corporate tax, VAT, leisure tax. That there is a need for a tax name chang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was verified. This will be a great help due to smooth the tax obligation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for all citizens in Article 38. This not only will help to ensure transparency in tax revenues increase three won, will play a major role in promoting, such as taxpayer rights and interests in the taxpayer's position to prevent unnecessary penalties, such as an increase in tax compliance costs. Until now there was no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taxes relating to the name chang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a very large bar in terms of empirical research which is the first clue regarding the change of the tax name.

〈Key words〉 Tax, Tax Name, Taxpayers' Rights, Tax Understanding, Tax Complianc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13.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ong@tax.or.kr, First Author

*** Invited Professor, Department of Tax Accounting, Koje College, pr15045@koje.ac.kr, Corresponding Author